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2년 11월 24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4월 16일
3. 정정사유
 - 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8.30 시행)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<p>② -----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② -----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(신설)	<p>④ 이 투자신탁이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.</p>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부 칙	(신 설)	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

		<u>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